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상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3조 신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4조 신설)

부정수령 등으로 보상금 환수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서면 통지를 거쳐 환수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제46조로 하고,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

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3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3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1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 경호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39조(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건의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건의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처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생명·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의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을 준용하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부상 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하되,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의 기준은 제4호와 같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신규, □ 추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위 손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내용(적용된 다른 법령)		
	지급일자	지급기관(지급자)	
	지급금액 금 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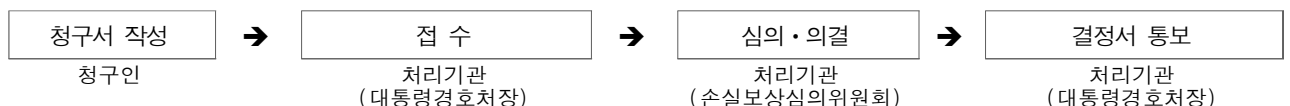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통령경호처장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전화번호)

대통령경호처장

직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전화번호)

대통령경호처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 금액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u> <u>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u> <u>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u> <u>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u> <u>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u> <u>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u>

<신 설>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
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
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
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
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소
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
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
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장
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람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처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
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
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
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
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
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
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
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1. 별표 제3호에 따른 부상등급
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
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
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를 포함한다)

2. 별표 제3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신 설>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3명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21항 본문에 따라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신 설>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 경호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제39조(위원장)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 설>

3. 위원이 심의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이 심의 안전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전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

<신 설>

<신 설>

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
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
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처
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보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환
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
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신 설> 제36조 (생 략)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5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6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	
연 락 처	(02) 800 - 5513